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 출 일 : 2026. 8. 3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주차장법」 개정(‘25.12 개정, ‘26.6.3.시행)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시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비율 조항 삭제 (안 제20조제2항)
 -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
- 별표·별지 서식 내 조례 인용 조항 현행화(별표1의2 및 6,7,8, 별지 제1호)

3. 참고사항

- 부서협의결과
 - 1) 협의기간 : 2026. 5. 26. ~ 2026. 6. 2.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첨부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6. 6. 4. ~ 2026. 6. 24.(20일)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27조”를 “제27조”로 한다.

별표 6 중 “제14조”를 각각 “제15조”로 한다.

별표 7 중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별표 8 중 “제24조”를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21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생략)</p> <p>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주차규모는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소수점 0.5이상인 경우 1대로 본다)로 한다. 다만, 10대 미만은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한다.</p>	<p>제20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현행 제1항과 같음)</p> <p><u><삭 제></u></p>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의2]</p> <p>공공(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6조제1항 및 <u>27조</u> 관련)</p>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의2]</p> <p>공공(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6조제1항 및 <u>제27조</u> 관련)</p>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6]</p> <p>공영주차장 위탁기준(<u>제14조</u> 관련)</p> <p>1.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p> <table><tr><th>구분</th></tr><tr><td><u>제14조</u>제1항제1호의 경우</td></tr><tr><td><u>제14조</u>제1항제2호의 경우</td></tr></table>	구분	<u>제14조</u> 제1항제1호의 경우	<u>제14조</u> 제1항제2호의 경우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6]</p> <p>공영주차장 위탁기준(<u>제15조</u> 관련)</p> <p>1.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p> <table><tr><th>구분</th></tr><tr><td><u>제15조</u>제1항제1호의 경우</td></tr><tr><td><u>제15조</u>제1항제2호의 경우</td></tr></table>	구분	<u>제15조</u> 제1항제1호의 경우	<u>제15조</u> 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							
<u>제14조</u> 제1항제1호의 경우							
<u>제14조</u> 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							
<u>제15조</u> 제1항제1호의 경우							
<u>제15조</u> 제1항제2호의 경우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p> <p>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u>제19조</u> 관련)</p>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p> <p>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u>제20조</u> 관련)</p>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8]</p> <p>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u>제24조</u> 관련)</p>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8]</p> <p>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u>제31조</u> 관련)</p>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지 제1호서식]</p> <p>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u>제21조제1항</u> 관련)</p>	<p>■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지 제1호서식]</p> <p>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u>제22조제1항</u> 관련)</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개정 후,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
- 상위법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교통국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붙임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6A경기남양029)

1. 주차관리과-7984(2026. 5. 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경기남양029) 1부. 끝.

여 성 아 동 **배원희**.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26. 5. 27.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16666	(2026. 5. 27.)	접수	주차관리과-8036	(2026. 5. 27.)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여성아동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3865	팩스번호	031-690-2269	/ yhle0127@korea.kr	/ 비공개(5)	

- 정략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남양029			
정 책 명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당자명	양영서	전화번호	031-590-87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차관리과)	○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비율 조항 삭제 및 제1항의 본문화 (안 제20조) ○ 별표, 별지 서식 내 조례 인용조항 현행화 (안 별표1의2, 별표6~8, 별지 제1호서식)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27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주차관리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6-27)

주차관리과-7985(2026. 5. 26.)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문/판

주무관	송호민	청문관리팀장	특별유가	감사관	2026. 5. 27. 문영석
첨조자					
시행	감사관-6048	(2026. 5. 27.)	접수	주차관리과-8002	(2026. 5. 27.)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i.go.kr	
전화번호	031-690-4719	팩스번호	031-690-2079	/ rims@korea.kr	/ 비공개(5)
- 정략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남양주-27		
자 치 범 규 명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평 가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 7급 송호림
입 안 부 서	주차관리과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 9급 양영서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5. 27.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div>2026년 5월 27일</div> <div>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div> <div>(담당자 / 연락처 : 송호림 / 031-590-4719)</div> <div>주차관리과장 귀하</div>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1. 주차관리과-7985(2026. 5. 26.)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별표상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의무 설치 비율 조례 위임 규정 삭제(제19조의5 제2항)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 회 법 무 과 장 홍기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2026. 5. 27.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6429 (2026. 5. 27.)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의회 / http://www.nyj.go.kr
법무과 (금곡동) / hgi1235@korea.kr / 비공개(5)
전화번호 031-690-7320 팩스번호 031-690-2900

- 정략공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결과보고[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주차관리과-8175(2026.05.29.)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제명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06. 04.(목) ~ 2026. 06. 24.(수)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마. 향후 추진계획 : 제517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등 입법절차 진행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알영서	주차계획팀장	김지웅	주차관리과장	이흥섭	교통국장	전길 2026. 6. 25. 문길모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한지혜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시행	주차관리과-9527			접수			
우	-						/ https://www.nyj.go.kr/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 ① (생 략)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지 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 다.	②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u> <u>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u>	<u><삭 제></u>